



의안번호

제105호

## 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20. 8. 25.

# 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05호
----------	-------

제출연월일 : 2020. 8. 25.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 1. 제안이유

- 「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자금의 대여 금액은 “7천만원의 범위”에서 “지원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함.(안 제6조제1항)
- 나. “중앙자활센터”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명칭 변경(안 제6조제1항)
- 다. 자금의 상환 기간은 “개인·기관·단체는 5년 거치 후 5년 내”를 “지원신청자 중 자활기업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3년”으로 한다.(안 제6조제2항)
- 라.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명칭 변경(안 제1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불임참조
- 나. 예산조치 : 없음
-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2)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 아님
  -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7. 14.~ 2020. 8. 3.(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5) 비용추계서 : 없음

6) 충청남도 소관실과 : 사회복지과(041-635-4246)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 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7천만원의 범위에서” 를 “지원신청자의” 로,  
“중앙자활센터” 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개인·기관·단체는 5년 거치 후 5년 내” 를 “지원신청자 중 자활기업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3년” 으로 한다.

제15조 중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 을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 을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② 논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 을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③ 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 ” 을 “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으로 한다.

④ 논산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 ” 을 “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으로 한다.

⑤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중 “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 ” 을 “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으로 한다.

⑥ 논산시 축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 ” 을 “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으로 한다.

⑦ 논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 ” 을 “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으로 한다.

⑧ 논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 ” 을 “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으로 한다.

⑨ 논산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 ” 을 “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으로 한다.

⑩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 ” 을 “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으로 한다.

⑪ 논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 ” 을 “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

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⑫ 논산시 농산물가공지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⑬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⑭ 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⑮ 논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⑯ 논산시 강경근대화역사문화공간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⑰ 논산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⑱ 논산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⑲ 논산시 문화예술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㉔ 논산시 예학관 및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영 임
	의료자활팀장	최 영 숙
	담 당 자	최 지 혜 (746-5313)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없음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나. 추계 결과(산출기초 등) : 해당없음

**3.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영 임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 2(한국자활복지개발원)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자활복지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